

의안번호	2202502
의 퇴 인	성일종 의원
회 답 일	2024. 9. 2.
추계번호	24B246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8조의2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설립) 신설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녹색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함(제1항)	의무규정
		진흥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제3항) 1. 정책·제도의 조사·연구·기획 2.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 수립 지원 4. 다음 각 목의 사업의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 가. 제48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지지역을 포함한다) 지원 대책 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진흥사업 5. 탄소중립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6. 탄소중립 관련 전문인력 양성 7.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8.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무규정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8조의2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설립)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및 출연·보조 (안 제68조의2 신설)

-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녹색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을 설립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진흥원에 대한 출연·보조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¹⁾, 탄소중립 지원센터²⁾ 등을 지정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지원을

-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응센터의 지정·사업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하고 있음

-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연구원(KEI)을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22~'24)로 지정

[표 1]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2024년 지원 현황

(한국환경연구원 적응센터) 3,626백만원

-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이행지원, ▲ 적응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교육·홍보사업, ▲ 취약계층·지역 지원 컨설팅 및 효과분석

(국립환경과학원 적응센터) 2,336백만원

- ▲ 적응정보 과학적 기반구축, ▲ 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운영, ▲ 기후위험지도 ISP수립

자료: 환경부

- (탄소중립 지원센터)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정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31개 등 48개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2024년 기준 총 64억원 지원중

※ [참고자료]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현황 참고

- 개정안에 따라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을 설립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조직 및 사업 규모 등을 알 수 없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출연금·보조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개정안은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2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조직 규모 등은 해당 법안의 진흥사업의 종류 등이 의결된 이후에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3.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현황(2024.8월 기준)³⁾

□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정 현황

구분	시도	지정기관	지정일자
1	서울	서울연구원	‘22. 7. 22.
2	부산	부산연구원	‘22. 8. 25.
3	대구	(재)대구정책연구원 ※ ‘23.2.1. (재)대구경북연구원에서 승계	‘22. 7. 1.
4	인천	인천연구원	‘22. 6. 9.
5	광주	국제기후환경센터	‘22. 6. 24.
6	대전	대전세종연구원	‘22. 10. 1.
7	울산	울산과학대학교	‘22. 10. 1.
8	세종	대전세종연구원	‘22. 7. 1.
9	경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2. 8. 25.
10	강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22. 8. 23.
11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2. 8. 1.
12	충남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2. 10. 1.
13	전북	전북연구원	‘22. 6. 30.
14	전남	전남연구원	‘22. 7. 13.
15	경북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22. 6. 14.
16	경남	경남연구원	‘22. 9. 29.
17	제주	제주연구원	‘22. 4. 21.

3) 환경부 제출자료

□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현황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기관	지정일자
1	서울	동대문구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23. 7. 1.
2		서초구	사단법인 한국ESG경영협회	‘23. 8. 1.
3		노원구	(재)노원환경재단	‘24.4.1
4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경영연구소	‘24.6.1
5	대구	달서구	(사)지방행정발전연구원	‘24. 3. 1.
6	경기	안산시	(재)안산환경재단	‘23. 2. 1.
7		용인시	용인시시정연구원	‘24. 4. 8
8		포천시	대진대학교	‘23. 4. 11.
9		수원시	(재)수원시정연구원	‘23. 6. 19.
10		연천군	대진대학교	‘23. 8. 25.
11		양주시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23. 11. 1.
12		고양시	고양시정연구원	‘23. 9. 22.
13		의정부시	신한대학교	‘23.6.19(자체)
14		가평군	대진대학교	‘24.3.18(자체)
15	강원	삼척시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	‘23. 4. 25.
16		원주시	상지대학교	‘23. 7. 1.
17		춘천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4.5.1
18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3. 3. 27.
19	충남	당진시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23. 6. 20.
20		천안시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24. 5. 28.
21		논산시	건양대학교	‘24. 6. 4.
22	전남	목포시	(재)녹색에너지연구원	‘23. 6. 26.
23		여수시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23. 10. 10.
24	전북	전주시	전주시정연구원	‘23. 11. 20.
25	경북	포항시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	‘23. 5. 1.
26		구미시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	‘23. 3. 22.
27		의성군	(협)함께이룸	‘23. 3. 15.
28		경산시	지정 절차 진행 중	—
29		상주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4.5.1
30	경남	창원시	(재)창원산업진흥원	‘23. 1. 2.
31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24. 1. 30.
32		김해시	(재)김해연구원	‘24. 7. 26.